

**“아동학대범죄
더 이상은
안됩니다”**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 일시 | 2020. 6. 23. (화) 오후2시
- | 장소 | 국회 본관 228호
- | 주최 | 국회의원 양금희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재)여의도연구원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일 시 : 2020년 06월 23일(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 본관 228호

☐ 주 최 : 국회의원 양금희,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재)여의도연구원

☐ 주요 참석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종배 정책위의장, 주요 당직자

시 간	세 부 내 용	
14:00~14:2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부 : 개회 (사회 : 이앵규 미래통합당 여성가족부위원회 수석전문) - 국민의례 - 현장 축사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종배 정책위의장 - 인사말 : 양금희 국회의원
14:20~15:20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부 : 토론회 ○ 좌장 - 최순중 경기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 교수 ○ 기조발표 -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사업부 본부장 ○ 토론자(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前한국아동권리학회장) - 신의진 한국폭력학대협회장 (연대 세브란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황은희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회 회장 - 조신행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과 과장 - 강복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센터지원본부장
15:20~15:35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토론 및 Q&A
15:35~15:4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무리 발언 및 폐회

아동학대 법안 정비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2020. 06. 23. (화)

장 화 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목 차

- ◆ 1장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관
- ◆ 2장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
- ◆ 3장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

1장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관

법적 근거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아동복지법 제45조)

- 학대 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 의무(아동복지법 제22조)

- 아동학대 신고제도의 구축·운영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전국 공동, 24시간 접수)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 현재 68개소, 3개소 추가 계획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

- 현재 72개소, 4개소 추가 계획

전국아동보호 전문기관 68개소



* '20.6월 기준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개정 (2020.10.1 시행)

제 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대응체계 변동사항 발생하였고, 이는 '20.10.1.부터 시행
 → 시도/시군구 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국가의 책임 강화),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기능 강화

아동권리보장원(제10조의2 제22조제6항)

-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업무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직무교육
-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시도/시군구(제22조제3항, 제22조의4)

시도/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래의 업무를 실시

- 피해아동 및 가족,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
- 신고접수
- 현장출동 및 조사, 응급보호
- 피해아동 및 가족,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
-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아동보호전문기관(제46조제2항)

- 피해아동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사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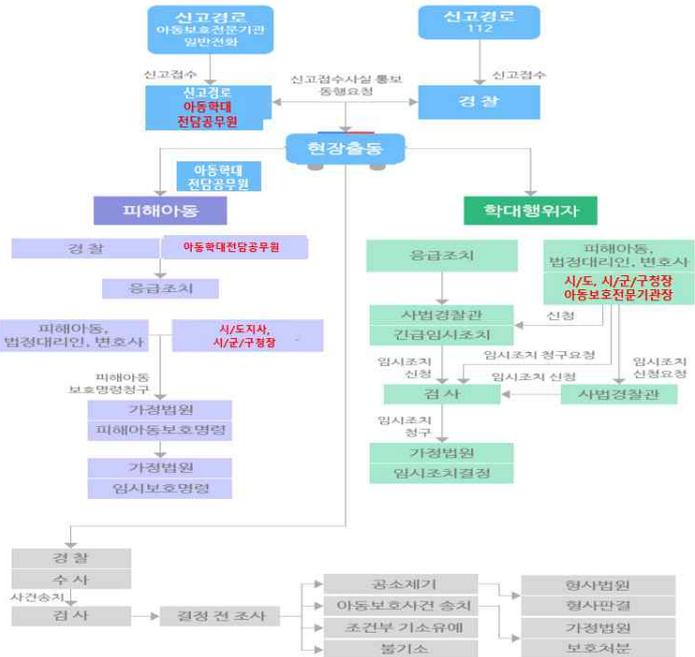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10.1 시행)

제 11조(현장출동)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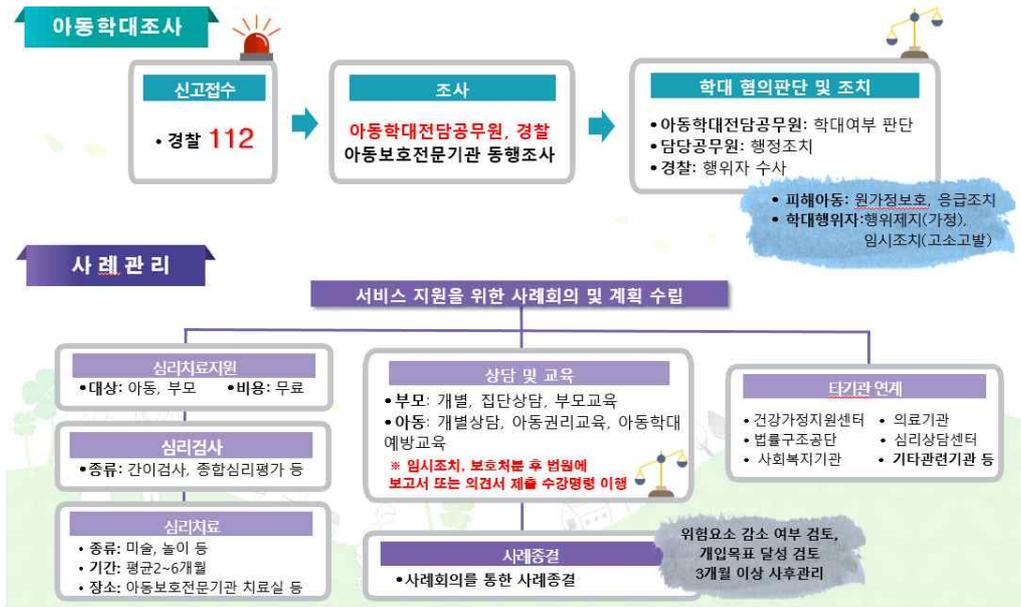
아동학대 개입과정

아동학대 개입과정 (아동학대처벌법)

112 혹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재는 아보전, 20.10.1 시행)에게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 진행



아동학대 개입과정



인프라 현황

□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올해 3개소 추가 예정)

(단위: 개소 / 기준 : 2020. 5.)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8	9	4	3	3	2	2	2	1	14	4	3	4	4	4	4	3	2

□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및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현황

(단위: 명 / 기준 : 2020. 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상담원	128	57	43	47	30	30	37	10	233	61	38	59	73	69	67	43	21	1,046
심리치료 전문인력	9	5	3	3	2	2	2	1	17	4	4	4	5	7	4	3	2	77

□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 (올해 4개소 추가 예정)

(단위: 개소 / 기준 : 2020. 5.)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2	4	4	2	2	2	4	2	1	13	5	7	4	3	8	5	3	3

예산 현황

□ 아동학대예방사업 본 예산 출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의한 범죄피해아동보호기금

구분		'20예산
합계	계	79,341백만원
	국비	48,398백만원 (범피 22,578, 복권 5,913, 일반 19,907)
	지방비	30,943백만원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일반회계 19,009백만원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비 내 홍보사업비		일반회계 898백만원 (아동학대 예방 홍보사업비)
통합전산센터 이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범피기금 45백만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비		범피기금 459백만원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범피기금 22,074백만원 (지방비 22,074백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복권기금 5,913백만원 (지방비 8,869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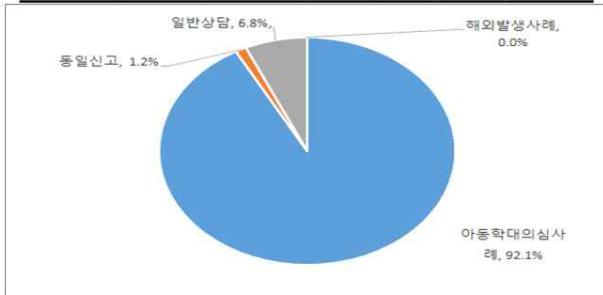
2장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2018)

아동학대 신고접수

(단위: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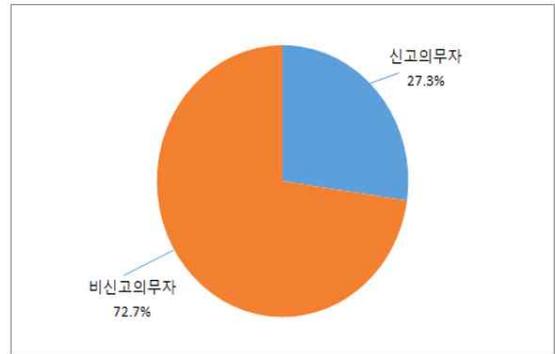
아동학대의심사례			동일 신고	일반 상담	해외 발생 사례	계
응급아동 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소계				
1,187 (3.3)	32,345 (88.8)	33,532 (92.1)	420 (1.2)	2,464 (6.8)	1 (0.0)	36,417 (100.0)



신고자 유형

(단위:건,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9,151 (27.3)	24,381 (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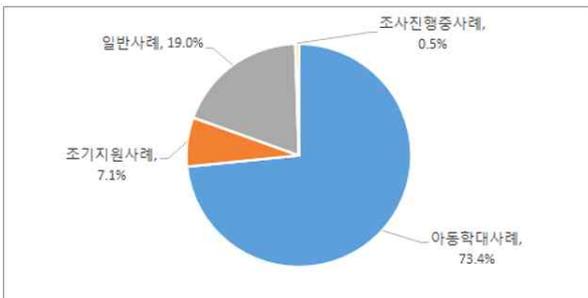


아동학대 사례판단(2018)

사례판단 결과

(단위: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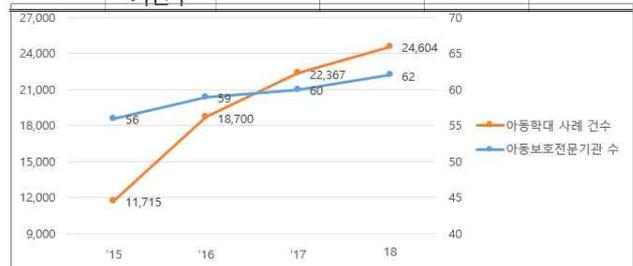
아동학대 사례	조기지원 사례	일반사례	조사진행 중사례	계
24,604 (73.4)	2,392 (7.1)	6,368 (19.0)	168 (0.5)	33,532 (100.0)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단위:건, %, 개소)

구분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아동학대 사례	건수	11,715	18,700	22,367	24,604
	증가율	16.8	59.6	19.6	10.0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수	56	59	60	62
	증가기관수	5	4	1	2



피해아동 발견율(2018)

지역별

(단위: %)



(단위:명, 개소, 명, 건, %)

지역	추계아동인구 (만 0~17세)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수	기관당 아동수	아동학대사례	피해아동 발견율 (인구 천 명 당)
서울특별시	1,343,716	9	149,302	2,210	1.64
부산광역시	476,141	4	119,035	1,612	3.39
대구광역시	387,186	3	129,062	1,168	3.02
인천광역시	481,627	3	160,542	1,167	2.42
광주광역시	266,625	2	133,313	962	3.61
대전광역시	256,898	1	256,898	643	2.50
울산광역시	205,506	2	102,753	734	3.57
경기도	2,261,150	12	188,429	6,076	2.69
강원도	227,748	4	56,937	1,219	5.35
충청북도	258,187	3	86,062	846	3.28
충청남도	358,282	3	119,427	1,321	3.69
전라북도	290,388	3	96,796	1,580	5.44
전라남도	280,188	3	93,396	1,723	6.15
경상북도	398,514	4	99,629	1,822	4.57
경상남도	566,993	3	188,998	1,118	1.97
제주특별자치도	120,437	2	60,219	335	2.78
세종특별자치시	75,904	1	75,904	68	0.90
계	8,255,490	62	133,153	24,604	2.98

※ 피해아동발견율: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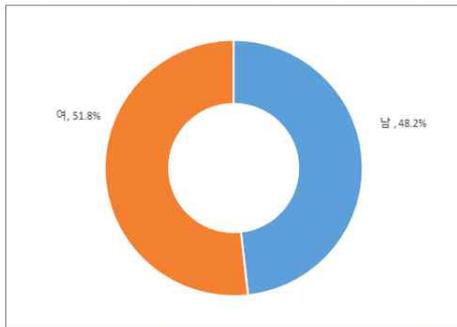
✓ 아동학대 발견율(%): ('14) 1.10 → ('16) 2.15 → ('18) 2.98

아동학대 사례분석 결과(2018)

피해아동 - 성별

(단위:건, 명, %)

구분	남아		여아		계	
건수(비율)	11,867 (48.2)	12,737 (51.8)	24,604 (100.0)			
명수(비율)	9,707 (48.5)	10,311 (51.5)	20,018 (100.0)			



❖ 아동학대사례 24,604건에 동일한 아동이 한번 이상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가거나 혹은 동일한 아동이 한 명 이상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아동 특성 값의 건수와 명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피해아동 - 연령

(단위:건,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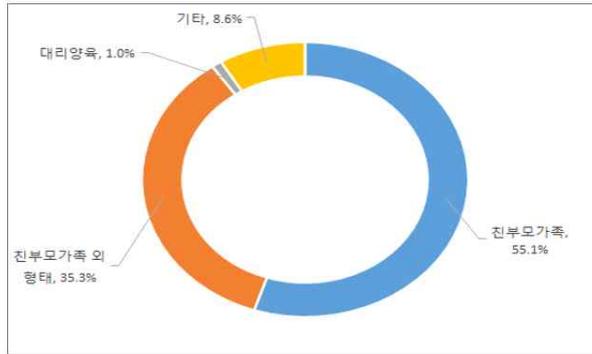
연령(만)	건수(비율)		명수(비율)	
1세 미만	503 (2.0)	366 (1.8)		
1세	524 (2.1)	395 (2.0)		
2세	827 (3.4)	617 (3.1)		
3세	936 (3.8)	692 (3.5)		
4세	891 (3.6)	680 (3.4)		
5세	864 (3.5)	674 (3.4)		
6세	1,115 (4.5)	876 (4.4)		
7세	1,427 (5.8)	1,146 (5.7)		
8세	1,330 (5.4)	1,050 (5.2)		
9세	1,552 (6.3)	1,283 (6.4)		
10세	1,797 (7.3)	1,438 (7.2)		
11세	1,807 (7.3)	1,481 (7.4)		
12세	1,846 (7.5)	1,547 (7.7)		
13세	1,913 (7.8)	1,580 (7.9)		
14세	2,265 (9.2)	1,921 (9.6)		
15세	1,894 (7.7)	1,589 (7.9)		
16세	1,634 (6.6)	1,405 (7.0)		
17세	1,479 (6.0)	1,278 (6.4)		
계	24,604 (100.0)	20,018 (100.0)		

아동학대 사례분석 결과(2018)

피해아동 - 가족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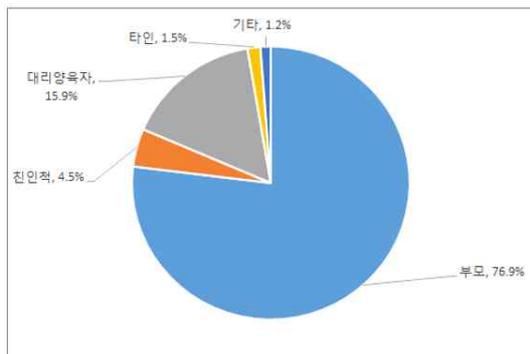
(단위:건, %)

친부모 가족	친부모가족 외 형태								대리양육형태				기타	계
	부자 가정	모자 가정	미혼 부.모 가정	재혼 가정	친인척 보호	동거 (사실혼 포함)	소년 소녀 가정	소계	가정위탁	입양가정	시설보호	소계		
13,546 (55.1)	2,997 (12.2)	2,865 (11.6)	404 (1.6)	1,435 (5.8)	483 (2.0)	490 (2.0)	8 (0.0)	8,682 (35.3)	27 (0.1)	44 (0.2)	187 (0.8)	258 (1.0)	2,118 (8.6)	24,604 (100.0)



아동학대 사례분석 결과(201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관계	건수(비율) (단위:건, %)	
	건수	비율 (%)
부모	친부	10,747 (43.7)
	친모	7,337 (29.8)
	계부	480 (2.0)
	계모	297 (1.2)
	양부	36 (0.1)
	양모	22 (0.1)
	소계	18,919 (76.9)
친인척	친조부	147 (0.6)
	친조모	229 (0.9)
	외조부	74 (0.3)
	외조모	118 (0.5)
	친인척	352 (1.4)
	형제, 자매	194 (0.8)
	소계	1,114 (4.5)
대리양육자	부,모의 동거인	270 (1.1)
	유치원교직원	189 (0.8)
	초, 중, 고교 직원	2,060 (8.4)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76 (0.7)
	보육 교직원	818 (3.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13 (1.3)
	기타시설 종사자	27 (0.1)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33 (0.1)
	위탁부	7 (0.0)
	위탁모	2 (0.0)
	베이비시터	11 (0.0)
	소계	3,906 (15.9)
	기타	665 (2.7)
계	24,604 (100.0)	

아동학대 사례분석 결과(2018)

아동학대사례 유형



❖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단위:건, %)

성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남	7,256	(51.7)	8,297	(47.9)	283	(17.6)	2,188	(50.5)	18,024	(48.3)
여	6,767	(48.3)	9,037	(52.1)	1,327	(82.4)	2,148	(49.5)	19,279	(51.7)
계	14,023	(100.0)	17,334	(100.0)	1,610	(100.0)	4,336	(100.0)	37,303	(100.0)

❖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단위:건, %)

연령(단)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1세 미만	133	(0.9)	177	(1.0)	2	0.1	313	7.2	625	(1.7)
1~3세	930	(6.6)	1,433	(8.3)	8	0.5	770	17.8	3,141	(8.4)
4~6세	1,400	(10.0)	1,938	(11.2)	42	2.6	807	18.6	4,187	(11.2)
7~9세	2,430	(17.3)	3,052	(17.6)	134	8.3	847	19.5	6,463	(17.3)
10~12세	3,067	(21.9)	4,035	(23.3)	452	28.1	782	18.0	8,336	(22.3)
13~15세	4,042	(28.8)	4,408	(25.4)	575	35.7	581	13.4	9,606	(25.8)
16~17세	2,021	(14.4)	2,291	(13.2)	397	24.7	236	5.4	4,945	(13.3)
계	14,023	(100.0)	17,334	(100.0)	1,610	100	4,336	100.0	37,3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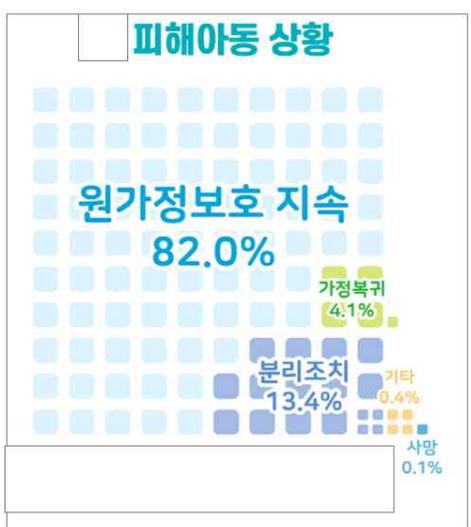
❖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건, %)

관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부모	11,343	(80.9)	13,801	(79.6)	386	24.0	3,698	85.3	29,228	(78.4)
친인척	725	(5.2)	743	(4.3)	95	5.9	132	3.0	1,695	(4.5)
대리양육자	1,702	(12.1)	2,473	(14.3)	823	51.1	490	11.3	5,488	(14.7)
기타	253	(1.8)	317	(1.8)	306	19.0	16	0.4	892	(2.4)
계	14,023	(100.0)	17,334	(100.0)	1,610	100.0	4,336	100.0	37,303	(100.0)

※ 중복포함

아동학대 사례분석 결과(2018)

피해아동 상황



(단위:건, %)

피해아동 상황		2018	
원가정보호 지속		20,164	(82.0)
가정복귀	원가정보호~가정복귀	101	(0.4)
	분리조치~가정복귀	888	(3.6)
	기타~가정복귀	31	(0.1)
	소계	1,020	(4.1)
분리조치	분리조치 지속	2,841	(11.5)
	원가정보호~분리조치	394	(1.6)
	분리조치~분리조치	46	(0.2)
	기타~분리조치	6	(0.0)
	소계	3,287	(13.4)
기타	101	(0.4)	
사망	32	(0.1)	
계	24,604	(100.0)	

아동학대 사례분석 결과(2018)

학대행위자 상황

❖ 고소고발사건처리

(단위:건)

아동학대사례 건수	고소·고발·사건처리
24,604	7,988

✓ 경찰-아보전 동행출동 비율(%) : ('17) 26.4 → ('18) 18.9 → ('19) 15.0

❖ 아동학대처벌법 조치

(단위: 건, %)

아동학대사례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24,604	2,290	9.3

❖ 응급조치,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단위: 건)

응급조치	임시조치 결정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1,174	1,558	314

대상자별 전체서비스 제공 실적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현황



※ 서비스란? 상담서비스, 의료지원, 심리치료지원, 가족기능강화, 학습 및 보호지원, 사건처리지원, 쉼터, 수탁프로그램, 피해아동 수탁 프로그램 등을 말함

재학대 사례의 현황

(단위:건, 명, %)

연도	재학대 사례 건수	재학대 아동수	아동학대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
2016	1,591	1,397	8.5
2017	2,160	1,859	9.7
2018	2,543	2,195	10.3

3장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1. 민간 위탁의 한계

- ◆ 보호자로부터 분리 등 공공의 업무를 **민간위탁(비영리법인)**으로 운영
 - 현장조사 거부 및 신변 위협이 빈번하게 발생

2. 개선 방향 및 추진 방향

-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2020년 10월 시행)**
 - 아동학대 조사의 공공성·강제력 강화 3개년 계획
 - 20년 118개시군구 290명, 22년 71개 시군구 273명, 22년 40개 시군구 152명
 - > 21년 조기정착 229개 시군구 926명(3교대) 배치. 전보제한, 수당지급 등 인센티브 권고 필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업무수행 매뉴얼 제·개정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업무 기능 전환
 - 종사자 역량 강화-상담원 전문성 강화: 사례관리 시 아동복지법에 강제성 조항 포함 요청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업 체계 강화

1. 문제점

- ◆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동행 출동을 위한 기본적 규정 및 절차** 있음
 - 동행 요청 규정(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16년, '19년 개정)
- ◆ 그러나, 업무 과다 등을 이유로 동행 출동이 **현장동행 미작동 및 학대사건 수사진행 이견** 등
 - 현장성 확대
 - 아동학대처벌법 12조 1항 (2020.10.1.시행)
 - 제11조 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 학대를 바라보는 시각에 이견 존재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업 체계 강화

2. 개선 방향 및 추진과제

◆ 실태점검

- 아동학대 신고부터 사후조치까지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현장점검, 개선방안 마련
- 공동업무수행지침 교육 수정·보완
 - ✓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보전 합동교육 추진

◆ 경찰 동행조사 확대

- 신고접수 시 상호동행 거부 → 일시·사유 등 아보전 통한 수사 보고
- 복지부-경찰청 간 정례 업무협의 추진

◆ 응급조치 등 신속한 보호 조치 이행

- 응급아동학대신고 기준 확대
 - ✓ 생후 36개월 영아 → 만6세 이하 아동
- ※ 응급조치: ('18) 1,174건

예산 확충 및 인프라 강화

1. 예산 확충

◆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재원 변경 필요

- (현행)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전환을 통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2. 인프라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22년 88개소 목표)

- 상담원 적정 업무량으로 내실 있는 사례관리 추진 ('19년 1인당 64건 → '22년 1인당 32건 목표)

◆ 학대피해아동쉼터 증설 ('22년 93개소 목표)

◆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17개소)에 심리치료센터 확충, 심리치료전문가 배치

◆ 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100% 수준 인상 (212억 → 249억 원 목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장민영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 현행 국내법체계

- 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다양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상황임
- 아동학대 관련하여 가장 주요한 법으로는 「아동복지법」을 꼽을 수 있는데 동법은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로써 특히,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 가해자 및 피해자,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관한 사항은 주로 특례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을 통해 규율됨
- 다만, 아동학대 관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이외에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기도 함

[아동학대 관련 주요 법률]

「아동복지법」				
<처벌 분야>	<예방 분야>	<보육시설 분야>	<장애 분야>	<기타>
<p>「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p> <p>「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p> <p>「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p> <p>「형법」</p>	<p>「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	<p>「영유아보육법」</p> <p>「유아교육법」</p> <p>「아이돌봄 지원법」</p>	<p>「장애인복지법」</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p> <p>「장애아동 복지지원법」</p> <p>「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민법」</p> <p>「입양특례법」</p> <p>「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p> <p>「한부모가족지원법」</p> <p>「청소년 기본법」</p> <p>「아동수당법」</p> <p>「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p>

* 해당 표는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법 상호간 상하관계 등을 표현한 것은 아님.

■ 최근 법률개정안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

분류	의안번호	주요내용	검토사항	비고
사전예방	2006175	[건강검진표 추가]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아동의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강검진 수검을 받지 아니한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여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의료비 상승, 의료진에 대한 책임 전가, 의료진의 신고의무와 중복 등의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아동학대의 심각성 및 의료진의 신고 의무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	아동복지법
	2024132	[교육 대상기관 확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령상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의 경우 상기 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들 기관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	아동학대 대상군에 속하는 아동들에 대한 교육 의무화 규정 신설은 매우 중요할 것임	
대응체계	2008444	[신고의무자 확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약사, 한약사, 우편집배원, 가정방문 학습교사, 결혼중개업자 등을 추가함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해당 가정 또는 아동과 관계를 유지하고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제재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아동복지법
	2000071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방안] 아동학대 신고 제고를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 도입함		
	2013763	[신고의무자 확대]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행위를 조속히 발견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함		
	2004576	[피해자 정보보호]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언론보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사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언론보도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및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인권보도준칙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 수단들이 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는 한편, 아동학대 처벌법상	

		개인정보 누설 처벌 규정(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유사법률에서의 처벌규정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 있음	
2014273	[부모 징계권 제한]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 폭행, 상해 등 학대행위를 제외함	개정안은 ‘폭행, 상해 등’ 을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징계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학대행위가 폭행, 상해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좁게 인식될 우려가 있음	민법 제915조
22504	[정서적 학대 구체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법관의 판단에 따라 해석될 수 있는 점, 시행령에 유형 규정하는 경우 미비함 없이 규정 가능한지 검토 필요	아동복지법
2000071	[아동친화적 사법 명문화] 아동학대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학대범죄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두어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아동학대 범죄수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과 절차의 전문성 제공함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자 등에 의해 장기간 행해지는 아동학대범죄 특성상 아동친화적 조사 및 재판제도의 명시적 규정 마련이 요청됨	아동학대처벌법
2010805	[국선변호인 의무화] 아동학대범죄사건과 피해아동명령보호사건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 및 국선보조인 선임의 의무화함	아동학대의 79.8%를 차지하는 부모에 의한 학대 사건에서는 학대행위자 아닌 부모 일방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되거나, 조부모·부모의 형제자매가 후견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변호사나 보조인 선임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문제점을 감안할 때, 의무적인 선정 필요성이 요청됨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처벌법

	22531	[아동학대 조사관]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업무를 공공(지자체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함	아동학대 관련 현장 출동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담당자의 권한 강화 및 전문성 확보 필요성이 요청됨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처벌법
	2001860	[전문기관 직원 처우 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경우 업무 강도나 업무의 중요성에 비하여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며 전문성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 호봉제로 인하여 우수한 경력직원을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직도 많은 실정인 바, 상담원 보수 기준에 근무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담원의 처우를 개선함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와 같이 공공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민간이 담당하면서 현장에서 조사거부 및 신변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 검토가 가능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과의 업무 구분 검토 및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 함께 검토 요청됨	
	2009297	[전문기관 요청시 수사기관 동행의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만으로는 출동현장의 실효적 제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 요청시 사법경찰관 동행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함		
	2008891	[전문기관 직원 폭행 등 가중처벌] 신고의무자로부터 아동학대범죄를 은폐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업무를 수행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토록 함		
처벌강화	2012849	[형량 상향]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함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강화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청되는 반면, 타법률과의 형평성 검토 필요함	아동학대처벌법
	2016913	[형량 상향]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학대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2012371	[감경사유 배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함	작량감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여야 하며 타법률과의 형평성 고려도 요청됨	형법
	2003906 등	[공소시효 폐지] 아동학대 중범죄자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함	공소시효 제도를 통해 아동학대 중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	아동학대처벌법

			<p>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는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준강간한 범죄자와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를 지은 범죄자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토 필요성 있음</p>	법
	2013450 등	<p>[비용 부담] 아동학대 행위가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이에 수반하는 경제적 비용을 부담함을 인식하게 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p>	<p>학대행위자인 부모가 상담 등의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경제적 문제로 인한 2차적인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p>	아동복지법
재발방지	22353	<p>[친권의 일시정지] 구 「민법」에서는 자녀에 대한 학대 등 부모의 부적절한 친권 행사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가 저해될 경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친권상실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 10. 15. 개정 「민법」은 친권의 일시정지 및 친권의 일부 제한 제도도 마련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별로 자녀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친권 제한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음 반면, 아동복지법 제18조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친권행사의 일시정지를 추가함</p>	<p>[민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구체적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친권의 일시정지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p>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와 국가 책임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법제 마련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임
 - 대한민국은 사인 등 비국가행위자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적 및 행정적 조

치를 취하여야 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2조에 따르면, 국가는 인권 보장을 위한 소극적 의무(침해 금지)는 물론, 적극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아동학대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적절한 입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모든 형태의 아동학대를 예방 및 방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 및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¹⁾

o 특히 유럽의 경우 아동학대에 관하여 국가가 이를 예방, 보호, 처벌 및 배상을 위한 법제적 조치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음

※ 이스탄불 협약 제5조제2항 : “비국가행위자에 의해 자행된 가정폭력에 관한 예방, 조사, 처벌 및 배상에 있어서 체약국은 상당 주의의무를 기울여 필요한 입법적 및 기타의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 아동학대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국가가 관련 법령 및 제도를 미비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사생활 보호권 또는 생명권 등 유럽인권협약이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음²⁾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제로서 차별 금지

o 학교에서의 차별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금지된 것에 반해 가정에서의 차별은 실제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과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그 금지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가정에서의 차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비판

- 민법은 친권자에게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가 있다”³⁾고 보는 한편, 이러한 자(子)의 “교양을 위하여 징계할 수 있는 권한”⁴⁾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법상 조항들을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차별이 자녀 훈육의 한 수단으로써 법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용인되어 오고 있음

- 한편 헌법 제10조에 따라서 아동은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1)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C/KOR/CO/5-6 para. 27 (Oct. 24, 2019).

2) 예를 들면,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Z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29392/95 (May 10, 2001).

3) 민법 제913조 참조.

4) 민법 제915조 참조.

있는 민법 제912조제1항을 감안할 때 부모의 징계권 역시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사되어야 할 것인 바, 국내법제 역시 체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함

- 이러한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가정에서의 체벌은 허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o 아동학대 종식을 위해 입법을 통한 체벌 금지 규정 신설 필요

- 체벌과 아동학대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체벌과 아동학대는 연속선의 양 끝에 있는 것” 으로서 아동학대는 체벌에서 변이되는 것으로 봄

※ 여러 사회과학적 분석들은 폭력의 학습, 아동의 뇌발달 저해, 아동의 비행 또는 반사회적 행동의 원인 등 체벌의 부정적인 효과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음

-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아동의 핵심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체벌 금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바, 동 협약 체약국으로서 대한민국 역시 체벌을 금지하는 입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 스웨덴, 핀란드 등 가정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해당 입법 제정 당시의 우려와는 달리 체벌 금지 법 제정 이후 아동의 비행 또는 범죄 등이 오히려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음

『아동보호서비스와 아동이 처한 양육 환경 사이의 틈새,
어떻게 할 것인가?』

』

황옥경(서울신학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보호서비스 관련기관간의 취약한 연계체제와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었고, 아동학대 예방 체제의 구축과 운영의 필요성 역시 극명하게 보여주었음.
 - 아동학대의 발견과 처벌에 집중하던 그동안의 아동보호서비스에서 이제는 아동보호서비스 관련기관간의 연계, 사후지원 모니터링과 아동학대 예방에 정책을 집중해야 할 것임을 재확인 해줌
 - 이는 다시 개입과 발견의 이슈를 제기함.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고, 발견을 어떻게 하는 가? 그리고 사후지원과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가? 이는 연계체제 구축에서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핵심 사항임
- 관련기관간의 취약한 연계체제, 관련기관의 연계 체제에 대한 모호한 지침과 안내, 인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사후관리,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각도 접근 노력의 도외시 등이 빛은 참혹한 결과임.
 - 위와 같은 아동보호서비스 보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지는 상당히 오래됨
-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아동이 태어나고 자란 가정에서 발생하며, 아동의 삶의 모든 것과 연계하고 있는 특성상 아동복지 서비스 관련기관 간의 연계와 꼼꼼한 사후 관리는 아동보호서비스 체제의 필수요소 임,
-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색한 인식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체제 구축에 대한 낮은 관심은 마치 유행처럼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에만 땀질식의 긴급 정책 보완책을 마련 해 음.
- 사회 전반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동보호서비스를 담당하는 일선 기관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대중에게 확산하고, 학대 가해자를 처벌하는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정이었음.
- 아동보호 서비스 공백의 피해는 오롯이 학대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의 몫 임. 표현조차 어

려운 치명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다시 대중의 관심을 받고 필요한 일부 서비스만 보완하여 작은 공백을 메우는 피동적인 정책 대응이 반복됨.

□ 10월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의 배치는 아동학대 조사를 누가 담당하는가의 업무분장의 변화로서 조사와 서비스 제공의 한계 문제를 일부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에 충분할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현재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기관 수와 인력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이 계획안은 일부 업무의 공백을 메우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피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학대 사안에 대한 접근 자체가 단선적인 것으로 아동학대 사안을 입체화하여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업무공조를 해 나가는 데에는 일정 수준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최근 일련의 사건들 역시 단선적 접근은 모두 한 것으로 보임, 즉 의심되면 신고하고, 가정내 양육이 어려우면, 다른 가정에 보내지고, 다시 데려오고, 그리고 다시 양육 불안정성에 놓여지고, 학대 당하였지만 발견이 안 돼 아동 혼자서 그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었음,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근절 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음.

□ 현재 보도된 자료를 토대로 할 때, 창녕사건의 경우, 4세부터 양육불안정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동의 학대 가능성을 포함한 양육 안정성내지는 안전성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의 사례 관리의 최종 책임과 역할 분담에 대한 명료한 지침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7세 천안 남아의 경우에도 사후모니터링의 관련기관 연계가 관찰되지 않았음.

- 언론의 취재로 드러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들은 관련된 한 개 기관이 접근하는 단선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관련기관의 공조가 있었다면, 충분히 발견하여 양육의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가 다수 임.

□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2020.10.01, 현장조사와 출동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담당) 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과제들이 산재 함.

- 아래의 질문에 확고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아동보호서비스와 아동의 양육 환경 사이의 틈새를 없앨 수 있을 것임.

1. 관련기관간의 유기적 업무 연계와 행정 공조를 이룰 수가 있는가?

- 최종 사례 관리 담당 기관의 선정/ 키워커의 선정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관련기관과 유기적 업무공조,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 책임 명시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뿐만 아니라 학교 및 유관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업무 공조 및 정보공유와 역할 분담 체제 구축

2. 서비스 주 제공 기관의 결정이 가능한가?

- 최초 발견기관의 서비스가 부적절한 경우(예: 학대 신고되었더라도 부적절 양육의 모니터링이 최선의 서비스라고 판단할 경우에, 관련 기관으로 대상 아동 이관)

3. 가정위기에 따른 개입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신고제 의존을 벗어날 수 있는가?

- 아동학대 위험 요소가 높은 가정에 대한 양육지지 서비스 제공
- 이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서 다른 유관 기관과 정보 공유 가능
- 가정내 위기를 정도에 따라 개입 절차 마련

4. 사후관리 체제가 확고한가?

- 현재의 3개월 사후관리 기간의 획일 적용의 한계를 탈피하려면, 아동의 연령과 위기 정도에 따라서 사후관리의 기간과 접근의 차이 적용이 가능해야 할 것임.

5. 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의 정례화 및 전문역량 강화. 그리고 위험사례에 대한 사후 관리 등 체계화

6. 아동보호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저할 수 있는가?

- 신체, 방임, 정서, 성학대의 네 가지 범주의 아동학대로 판정할 경우, 위험상황에 처한 아동보호(child protection)의 개념이 축소 적용된 아동보호 입장임.
- 이 경우 학대사실이 확인된 아동에 대한 개입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정해진 범주를 벗어난 아동 즉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 또래에 의한 따돌림과 폭력, 학교 폭력, 가정폭력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농후.
- 아동에게 안전하고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아동보호(safeguarding)의 개념으로 아동보호서비스의 범주가 확대해야 할 것임.

7. 이외, Covid-19으로 인한 아동학대의 위험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 최근 중국인 가정에 대하여 아동학대 증폭여부를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시행

아동보호 서비스 관련 기관의 업무 공조와, 정보 공유, 그리고 역할 규정은 아동보호서비스의 틈새를 메우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 임.

Kids Rights Foundation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에 기반 하여 182개국 아동의 상황을 ‘생존권’, ‘건강권’,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인권 환경’의 5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함. 이 기구는 2020년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순위를 세계 13위로 평가. 2017년 82위, 2018년 76위, 2019년 70위와 비교할 때 괄목할 만한 상승.

이러한 상승된 순위와 아동의 행복과 정적 상관이 있는 가는 또 다른 논의의 주제이지만, 최근의 아동 학대 사건은 Kids Rights Foundation의 아동인권 상황 평가 결과를 무색하게 함,

평가 결과에 걸맞도록 아동보호서비스의 틈새를 속히 메울 수 있기를 기대함.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당장 필요한 것들.

신의진

연세의대 정신건강의학교 교수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

한국 영유아정신건강학회 회장

또 다시 끔찍하게 부모로부터 각종 폭력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은 아이들 사건이 우리 사회를 아프게 하고 있다. 사건의 잔혹함에 우리 모두는 놀라지만, 더 큰 문제는 항상 이 정도의 아동 학대는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 반복되어왔고, 그 제도적 발전이 너무 더디다는 것이다. 2020년에 발생한 최근의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고, 당장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아무리 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육아 관련 문화를 바꾼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아이들은 과격한 어른들의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는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분노하기 보다는 가급적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먼저, 조기에 발견하여 아이를 보호하느냐, 둘째,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정부가 얼마나 전문적으로 신속히 수사를 하고 가해부모를 처벌하고 아이의 고통을 치료하느냐, 마지막으로 아이를 가해부모로부터 보호하여 제대로 치료하고 교육을 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는 장기적 보호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조기발견 시스템 강화

-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 이들에 의한 신고가 30%를 넘지 못해 선진국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 교사, 의료인 등 아이들의 상처와 고통을 빨리 알아차리는 신고의무자들이 제대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지원해야 한다.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는 한 아이들의 신체적, 행동의 이상 징후만으로 의심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고 의무자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마련되어야 아동학대 조기 발견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신고 이후 가해자들로부터 시달리거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행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석아동, 건강검진에서 누락되는 아동을 항상 점검

하는 방안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2.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와 학대 아동 보호

- 현재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과 경찰이 함께 가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이번 사례들에서 보듯이 대부분 완강하게 거부하는 학대 가해자의 저항을 뚫고 제대로 조사하지 못해 아이들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까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와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힘과 전문성을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이 부분은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담당 경찰과 조사자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공과에 대해 제대로 지원, 보상하는 제도와 예산을 꼭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 관련 예산이 6.2조 인데,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250억이 채 안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면 아동학대를 막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공허한지 알게 된다.

3. 우리 실정에 맞는 학대 아동 장기 보호 및 자립 시스템 마련

- 다행히 학대 피해 아동이 발견되어 조사 후에도 80% 이상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 아이를 심하게 학대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자신들도 유사한 학대를 어린 시절 경험하여 이미 상당한 정신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상당한 수준의 치료와 재활, 교육이 필요하다. 학대 부모 치료, 지원 시스템도 없이 시간이 흐르면 다시 아이를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현행 제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선진국처럼 위탁 양육제나 입양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우리의 사회경제적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힘들기 때문에, 시설 양육이라도 예산과 전문성을 제대로 투입하여 질을 높여야 한다. WHO에서는 학대 아동을 대규모 시설 양육보다는 가정이나 소규모 시설에서 가급적 가정과 유사한 틀 속에서 기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명목으로 원가정 회복을 강조하거나, 단기 쉼터 위주의 지원 위주로 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심각한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상처의 치료가 어렵고, 성장하면서 건전한 인격을 함양하는 각종 심리와 교육적 지원 없이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어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필자는 2016년부터 학대와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들의 심리적 치유와 재활을 위해 예술심리치료와 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국가, 지자체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전문가들에 의한 섬세한 치료와 교육, 지원이 얼마나 이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게 되는지 실감하고 있다. 바로 이런 질 높은 맞춤형 심리 지원을 아이들의 상태와 연령에 따라 건강한 성인 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제도를 꼭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범죄 근절!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황은희(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회장)

먼저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 외 전문가들께 듣기로 하고, 저의 전문분야인 학대피해아동들을 양육하고 치료하면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복지법 상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공동생활가정과 별도 시설로 분리하여 예산과 사업간 차이에 따른 전문성을 강화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로의 법적 근거 신설 뿐 아니라 예산 항목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복지법 제53조의 2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학대가해자로부터 긴급 분리하여 응급·일시보호 및 단기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표와 같이 기능과 역할면에서 공동생활가정과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아동복지법 52조 시설 유형상 아동공동생활가정에 포함되면서, 시설이 노출되어 학대피해아동이 2차, 3차 피해를 당하는 등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학대피해아동쉼터와 공동생활가정 비교표 >

구분	학대피해아동쉼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법적 설치 근거	아동복지법 제53조 2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 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 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 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 류) 제1항 제4호 공동생활가정 :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 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 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시설
종사 자 배치 기준	2020년 아동분야사업안내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15 (총5명) 원장 1명 보육사 3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15 자격기준은 상동 (총3명) 시설장 1명 보육사 2명 - 보육사 교대인력 1명 추가 배치로 대부분 시설장 1명, 보육사 2명
시설 설치 기준	-건축물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 -면 적 : 100㎡ (실면적) 이상 -구 조 : 방4개 화장실2개 -비 고 : 1개는 반드시 심리치료실, 아동용 방2개, 직원용 방1개 쉼터외부 및 치료실 cctv 설치	-건축물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 -면 적 : 82.5㎡ (실면적) 이상 -구 조 : 방3개, 화장실 2개 -비 고 : 시설 신고시 주택마련 자부담, 담보가 50% 이상 있으면 안 됨.
예산 지원 체계	- 예산: 복권기금 (국비40%, 지방비60%) - 신규 설치 매입비 3억, 설치비 2,700 만원 복지부에서 지자체로 교부 - 인건비 1인 27,577,000*5명 - 운영비 연 12,120,000원 - 사업비 연 30,300,000원	- 예산: 복권기금 (국비40%, 지방비60%) - 신규 신고시 실질적 1년 이상 운영자 자부담 (예산집행시기, 설치시기 등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자부담 운영 중) - 인건비 1인 27,577,000*3명 - 운영비 월 326,000원*12월=3,912,000원 - 사업비 없음

구분	학대피해아동쉼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대상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법원에 의하여 분리·인도 및 보호하는 만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아동 수 : 7인 이내 -보호기간 : 3~9개월간 집중심리 치료 및 생활지도 후 원가정 복귀, 가정 위탁, 일반 그룹홈으로 전원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사회적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만18세 이하 아동 -아동 수 : 5~7인 보호 원칙 -남/녀 분리운영(미취학 혼용가능) -보호기간은 만18세까지 이후 아동복지법시행령에 의거 연장 가능함 -장애등급을 받은 아동의 경우 장애인 부서로 의뢰하여 장애인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해야 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 장애인시설 입소 결정시까지 보호가능
운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법인만 가능함 -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설치한 공동생활가정을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한 경우에는 지속 지정 운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법인 및 개인시설 가능함 - 2017년 아동그룹홈 실태조사 결과 개인 68.5%, 법인 및 단체 31.5%
관리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회복지정보통신망,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2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사회복지정보통신망 사용
공개 범위	- 비공개	- 공개
관련 단체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임의단체)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보건복지부 인가 사단법인)

예시) 아동복지법 개정안

현행법	개정안
제53조 2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u>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u> <u>(신설)12항 학대피해아동쉼터 : 학대피해 아동이 긴급분리되면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을 지원하는 시설</u>

● 학대피해아동은 기존의 학대적 환경에서 시급히 구조 되어야 합니다.

아동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지역사회에 인지가 되어도 근본적인 환경은 그대로 놔두고 외부 환경의 변화를 통해 아동을 지원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아동이 학대상황

에서 벗어나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아동이 학대로 신고가 되어도 한 차례 신고로 분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3~4차례의 경고를 통해 분리가 되는데 그 이유는 첫째, 학대가해자가 대부분 친권자이고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지자체가 친권자의 권한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동자기결정권에 있어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동이 분리를 거부하는 문제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분리의 시기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미뤄지는 기간 동안 폭력은 더욱 심해지고 아동의 심리·정서적 상황은 치유가 가능해도 시간과 재원이 많이 투입 돼야하고 심한 경우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학대피해아동이 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 조속히 학대 적 환경에서 아동을 구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들이 환경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쉼터나 보호시설에서 안정적인 보호를 받은 경험을 하게 되면 원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재학대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분리가 되어 치료를 받고 치유가 되는 동안 학대가해자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어렵게 분리가 되어 학대피해아동쉼터나 그 밖에 보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학대가해자가 친권자라는 이유로 학대피해아동보호체계 안에 있는 공무원, 상담사, 시설종사자들에게 다양한 폭력과 압력을 행사하는데 이에 대해 강력히 제지 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합니다.

또한 아동의 경우도 가해자가 피해아동보호명령기간이 지나고 상담 및 교육 등을 이수하고 나면 아동의 의사를 물어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장애아동, 혹은 유아의 경우 아동의 자기결정권은 무시됩니다.

그러다 보니 재 학대 상황에 노출되는 아동들의 경우 다시 분리가 되어도 어른들에 대한 불신도가 높아지고 심리·정서적 상황은 그 전 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양육과 치료를 담당했던 주변의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등 최선을 다해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학대의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문제행동으로 치유가 어려운 아동의 경우 특별치료

기관이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 정서적 신체적 학대상황에 노출 되어, 치유되기 어려운 중증 문제행동을 가지고 고통 받는 아동의 경우 본인들도 힘들지만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상황을 연출하는 사례(자해, 자살시도, 폭력)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학대로 인해 분리되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이 쉼터에 와서도 불안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폭력, 자해, 등 쉽게 치유되지 않는 복합적인 문제행동을 가진 아동들을 치유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치료기관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나 상위기관들은 종종 정원대비 현원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아동상황에 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무시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 일반아동대상의 시설이지만 많은 경우 장애아동 비율이 높고, 유아, 자해, 자살시도, 극단의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입소할 경우 다른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입소인원을 조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 학대피해아동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입소아동의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40대60으로 매칭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는 매우 부족하여 경력이 20년인 종사자와 1년인 종사자의 인건비는 똑같이 정액(2020년 27,577천원)으로 지원되고, 이는 퇴직금과 사회보험을 포함한 금액이다 보니 최저인건비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근무조건은 주말, 휴일, 명절 모두 반납하고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사회복지계의 3D업종입니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다양한 수당(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명절수당 등)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2021년 7월부터 시행해야하는 법인 직접고용과 관련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들은 극소수 재정상황이 좋은 곳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9살 어린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 이어 뜨거운 프라이팬에 9살 여자 어린이의 손가락을 지지는 의붓아버지의 학대행위가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건으로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분리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분리한 아동을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시설을 늘리는 것에 선행하여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누구를 만나든, 지역이 어디든 차별받지 말아야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사들 또한 어디서 근무하든 그 전문성과 경력이 인정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의 최일선에서 응급실 역할을 하는 쉼터에서는 아동이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론5

조신행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과 과장

(현장토론)

토론6

강북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센터 지원본부장

(현장토론)